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8. 30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8.19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6.8.22.

다. 상정일자 :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6.8.30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조주연

가. 제안이유

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주민등록법」 현행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
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 적용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」로 변경
- 제2조 제1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의 조문 중 “법 제17조의8에 의한”을 “법 제24조에 따른”으로 변경
- 제2조 제2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조문 중

“법 제18조의2에 의한”을 “법 제30조에 따른”으로 변경

○ 제2조 제3호 벌칙에 관한 조문 중 “법 제21조”를 “법 제37조”로 변경

○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표기를 정비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김은모)

○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주민등록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됨에 따라, 우리 구 「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」중 안 제2조 각 호의 조례 내용을 개정된 상위법인 「주민등록법」에서 규정한 근거법령에 맞게 수정함은 물론 잘못 표현된 동(同)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와 약어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 동(同) 조례안은 2016. 7. 21.~ 8. 10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,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은 없으며, 또한 상위법인 「주민등록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「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」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

1. **안 제2조**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위법인 「주민등록법」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 조문의 법령근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

가. 안 제1조의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”=> 안 제

2조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

나.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 제17조의8에 의한”=> “「주민등록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

다.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18조의2에 의한”=> “법 제30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

라.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21조”=> “법 제37조”로 한다.로 함

2.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

가. **제명**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」로 띄어쓰기를 한다. **안 제1조** 중 “주민등록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”=>“ 「주민등록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”으로 한다.로 하고

다. **안 제2조** 중 “각호의”=> “각 호의”로, “기타”=> “그 밖의”로 하며,

라. **안 제3조제1항**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”=>“제2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시정명령등”=> “시정명령 등” 상위법인 「주민등록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됨에 따라 동(同)조례 제2조 조문의 관련법 근거를 수정함은 물론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,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은 마포구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향후 규정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